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16호 2017. 11. 1.(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7-130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참여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7-131호 (주)양지생태촌 관광농원 준공인가 고시 9
 거창군 고시 제2017-132호 거창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122호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2
 거창군 공고 제2017-114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13

의 감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58-11 외 2건(부여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8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58-11	2009-04-01	2017-11-01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관청의 비용을 위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4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5길 9-2	2009-04-01	2017-11-01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9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온천길 98-7	2009-04-01	2017-11-01	온천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에 거창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거창군수

□ 참여목적

- 서부경남지역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참여

□ 참여자치단체 현황 : 11개 시·군

- 거창군·거제시·고성군·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통영시·하동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 협의회 구성

- 구 성 :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서부경남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부담금 : 10백만원/년(협의회 운영 경비 및 서부경남 관광활성화 관련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등 관련 제비용)

□ 협의회 주요기능

-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
- 권역별 연계 특성화 관광상품 개발
- 국내외 언론인, 여행업체 대상 팸투어 실시
- 국내외 공동 관광설명회 개최
- 기타 지역관광산업발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수행 등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

제4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관광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실·과를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시·군의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재정운용,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3.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 시행
4.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5.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6. 공동 시티투어사업
7.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협의회는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세입세출결산안은 그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회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회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의제가 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합의)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사항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31.

거창군 수

1. 사업자

- 대표자 : 노 * 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35번길 **번지

2. 지정현황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83-1, 84-1
- 규모 : 27,300m²
- 준공일 : 2017. 10. 26.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0. 20. ~ 2017. 10. 20.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면적 : 6,266m²
 - 숙박시설 : 1,237.89m²
 - 음식제공시설 : 105.32m²
 - 기타시설 : 618.52m²
- 사업비 : 3,800,000천원

거창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 가 고시합니다.

2017. 11. 02.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면적		
폐기물 처리시설	거창군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3단계 조성공사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번지 일원	74,580	25,351	경고317호 (1999.12.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환경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계					58,748	25,351		
1	거창군 거창읍 평리 양	산142	20	임	7,749	7,749	거창군	
2		산142	2	임	1,587	1,587	거창군	
3		산143		임	298	298	장석윤	
4		산144	41	임	1,906	1,906	거창군	
5		산144	17	임	5,653	1,619	거창군	
6		263		전	1,150	1,150	거창군	
7		264		전	582	582	거창군	
8		265		답	555	555	거창군	
9		266		전	1,583	1,583	거창군	
10		267		답	1,094	1,094	거창군	
11		267	1	전	565	565	거창군	
12		산142	13	임	10,846	641	거창군	
13		268		답	5,126	4,661	거창군	
14		산144	4	임	19,255	879	거창군	
15		산142	12	임	799	482	거창군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법원공탁금)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과징금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 10. 27. ~ 2017. 11. 11.
3. 공고장소: 거창군청 홈페이지, 거창군 공보
4. 공시송달 내역
 - 성 명: 정*순
 - 납세자번호: 580221-2*****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62-6
 - 압류채권: 법원공탁금
 -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5. 문 의 처: 경상남도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055-940-3313)

2017. 10. 27.

거 창 군 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나.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읍면장 직렬 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조정

-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
 - 본청 7급(증1): 90명 ⇒ 91명(행정·농업·녹지 1)
 - 직속기관 7급(증1): 37명 ⇒ 38명(수의 1)
-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
 - 본청 8급(증1): 61명 ⇒ 62명(행정·복지 1)

라. 읍면장의 직렬 변경

- 웅양면: 행정, 농업, 시설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신원면: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행정, 농업, 시설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31.~2017. 11. 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행정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ksh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연 110,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76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6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662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79명</u>----- -----</p> <p>1. -----: <u>665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9 676	286 284	14	134 133	70 69	64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7 644	282 280	14	107 106	43 42	64	53	40	151
	4급	1	1							
	4~5 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8 605	268 266	11	101 100	39 40	62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실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붙임 2]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90명 ⇒ 91명(행정·농업·녹지 1)
- 직속기관 7급(증1): 37명 ⇒ 38명(수의 1)

나.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8급(증1): 61명 ⇒ 62명(행정·복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읍·면장 직렬 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읍·면장의 직렬 변경(안 별표 2)

- 웅양면: 행정, 농업, 시설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신원면: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행정, 농업,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명	직 급 (복수)	관할구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창읍 일원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주상면 일원
응양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응양면 일원
고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 일원
북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 일원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위천면 일원
마리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 일원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 일원
남하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 일원
신원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신원면 일원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가조면 일원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 일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